ESG

최신현안분석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9.07

ESG 최신현안분석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오덕교 연구위원 deokkyo@cgs.or.kr

요 약

-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공개된 상장/비상장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율을 분석함
- 퇴직금 지급율은 1년 재직시 받게 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로 1년 재직시 1개월 급여(30일 임금)로 받음
-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3인 계열사 두 곳에서 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 이 임원은 직원 퇴직금의 60배를 받음
- 분석기업 990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2.7로 나타났으며, 분석기업 중 60%는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
- 직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3.5, 직급별 비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1.6으로 직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보다 직급별 차등 여부와 상관없이 더 높은 퇴직금 지급율을 보임
- 조사된 47개 대기업 집단의 퇴직금 지급율은 3이상 4 이하에 26개 기업집단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대 퇴직금 지급율은 6으로 조사됨
- 상장기업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상장/비상장 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1. 배경

□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장기업은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들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 또한 2016년 3월 동법 개정으로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보수총액 상위 5인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동법 제159조 제2항 제3의 2호)

-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19.3.28. 개정)에 따르면, 개인별 보수총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를 기재하고, 보수총액은 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나누어 내역을 공개해야 함

〈표 1〉 사업보고서 내 퇴직 소득 기재 예시

퇴직 소득	150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도정산지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름 평균급여 × 근무기간 × 직급별 지급률(200%-400%)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월 기준급여액 1천만원, 근무기간 5년에 따른 각 직위별 지급율(회장직 : 300%)을 곱하여 1억5천만원을 산출

출처 : 기업공시서식 기준(2019.3.28.), p. 140.

□ 한편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의 지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코오롱 이웅렬 前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411억 71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음[1)]
- 또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조양호 前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인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400억원 대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됨[2)]

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0203O4g

- 2015년 1월 유진기업의 유경선 前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비등기임원이 되면서 152억 3,4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함

□ 이처럼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퇴직금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직원 및 타 임원보다 높은 퇴직금 지급율임

-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통상적으로 1이며 1년 계속 근무시 1개월 급여(30일 임금)을 받는 반면에, 임원들은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지급율을 적용받음

□ 본 고에서는 국내 상장/비상장 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함

2.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의미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text{임원의 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근무기간*}}{12} \times 3$$

* 근무기간은 근무개월 수를 의미함

- 다시 말해서, 소득세법에서는 3.6의 지급율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급율이 3.6을 초과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3]
  -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2019년 7월 25일 정부는 상기 지급율을 3에서 2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4]
  - 이는 실제로는 지급율을 3.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것임

□ 본 분석에서 임원퇴직금과 지급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임원 퇴직금 = (연봉 × 1/12 × 퇴직금 지급율 × 재직년수)
  - 퇴직금 지급율 3은 임원이 1년 재직시 3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0914.html

3) 수식에서는 3년 평균 급여를 10으로 나누고 지급율이 3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과 동일하게 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면, 다시 말해서 10이 아닌 12로 나누면 지급율은 3.6이 됨

4)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2019.7.25.

□ 임원 퇴직금 지급율은 직원 퇴직금과의 괴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보수격차 이외에 퇴직금 지급율의 차이는 임원의 사적인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할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음

3. 자료 수집

□ 본 연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에서 2002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조사함

- 소집공고 중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금 지급율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함
  - 조사 경로 : 각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 Ⅲ. 경영참고사항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전체 임원 직급에 대한 지급율이 공개된 기업에 한하여 조사함

□ 2019년 5월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2,271사와 그 외 비상장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총 42,276건 중 임원 퇴직금으로 검색된 9,078건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조사함

- 1,409건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확인하였고, 990개 기업(786개 상장기업와 204개 비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을 파악하였음
  -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93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479사, 코넥스 상장기업 14사로 구성됨
-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확인된 경우는 모두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제·개정을 하는 경우임
  - 그러나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업 중 일부는 해당 규정을 공개하지 않은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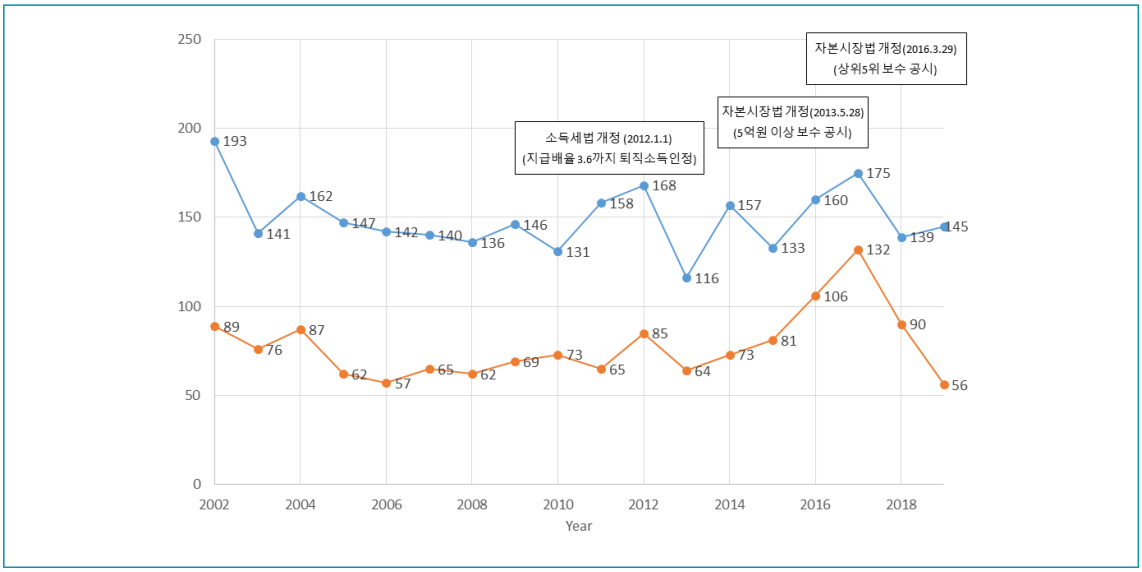
4. 자료 분석

1) 전체 분석

□ 연도별 임원 퇴직금 규정(퇴직금 지급율)을 개정한 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띠고 있음

• 201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퇴직소득을 포함한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서, 임원 보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기업들 또한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연도별 퇴직금 지급율 개정 기업 현황



□ 기업별로 조사된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직급 또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 지급율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최댓값을 분석하였으며, 전체 기업의 평균 지급율은 2.7,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치는 12로 조사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지급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상장 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순으로 높음(상세한 내용은 〈표 1〉 참조)

  - 지급율의 중간값은 코스닥은 2.5, 그 외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지급율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보다 유의하게 높음($p<.01$)

• 분석대상기업 중 지급율이 0, 다시 말해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한 기업은 총 38사로, 유가증권시장 12사, 코스닥 시장 15사, 비상장기업 11사로 조사됨

• 아울러, 소득세법 상 지급율 기준인 3.6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990사 중 242사로 24%를 차지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조사 기업 중 76%는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인정기준인 3.6이하로 정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 중 지급율이 3.6을 초과하는 기업은 각각 34%, 33%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개정 소득세법이 발효된 2012년 1월 1일 이후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개정한 247사 중에서 229사는 지급율을 3.6이하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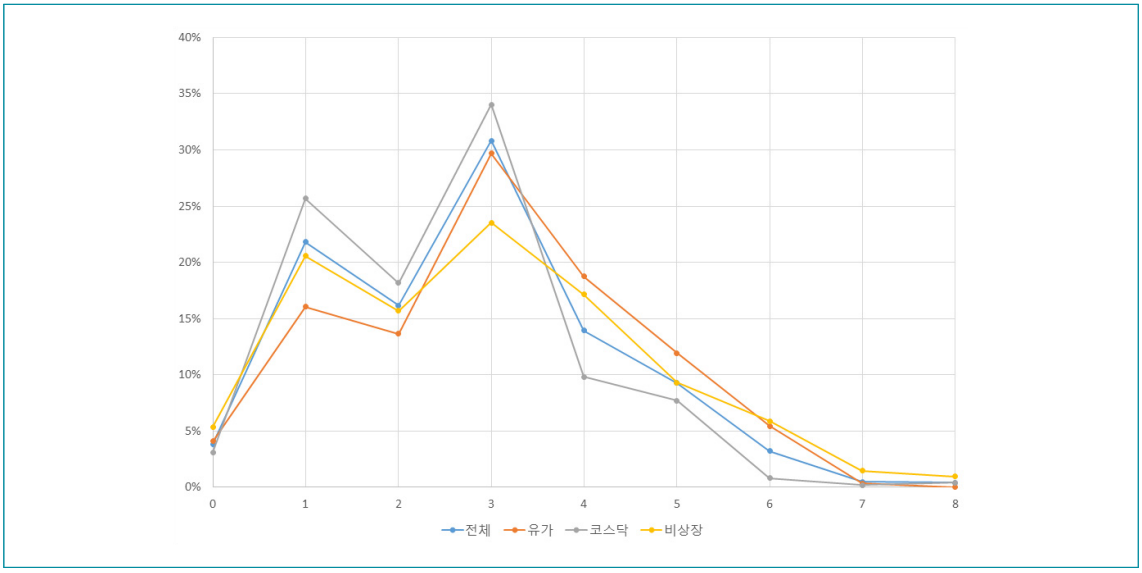
〈표 1〉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구분	기업 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댓값	지급율=0	지급배율 3.6 초과
전체	990	2.7	3	1.57	12	38	242(24%)
유가	293	3.0	3	1.54	7	12	101(34%)
코스닥	479	2.5	2.5	1.41	10	15	74(15%)
코넥스	14	2.3	3	0.96	3.6	0	0(0%)
비상장	204	2.9	3	1.91	12	11	67(33%)

* 괄호 안의 값은 기업 수 대비 지급배율이 3.6을 초과하는 기업 수의 비중을 의미함

- 지급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급율 1과 3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아래 〈그림 2〉 참조)
  - 이는 직급별 차등 지급율에서는 3이 가장 빈도가 높고 직급별 비차등 지급율에서는 1이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임

〈그림 2〉 상장시장별 지급율 분포



2) 직급별 차등 여부

□ 총 990개 분석대상기업 중 60%인 591사가 직급별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화하고 있음

- 기업들은 직급별로 지급율을 차등화하거나 비차등화하는 두 사례로 나눌 수 있음[5)]
  - 임원 직급별로 지급율을 차등하는 기업 중 일부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화함

5) 직급별 비차등화 지급율 적용 기업 중 일부 기업은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

□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3.5,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지급율은 10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지급율 중간값은 4로 전체 중간값(3)보다 높게 산출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직급 차등 지급율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보다 유의하게 높음($p<.01$)

〈표 2〉 직급 차등 지급율 기업 현황

구분	직급 차등						
	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전체	591	60%	3.5	3	1.14	10	1
유가	192	66%	3.8	4	1.07	7	2
코스닥	277	58%	3.3	3	1.13	10	1.2
코넥스	8	57%	2.8	3	0.55	3.6	2
비상장	114	56%	3.8	4	1.18	7	1

□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지 않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1.6, 중간값은 1로 나타났으며, 최대 지급율은 12임

- 직급별 비차등 지급율에서는 비상장기업이 가장 높은 평균 지급율(2.1)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가장 낮은 평균(1.4)을 보임
  -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지급율은 유가증권시장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최대 지급율 12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을 차등하는 경우임
- 직급별 차등 지급율의 평균은 비차등 지급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p<.01$)

〈표 3〉 직급별 비차등 지급율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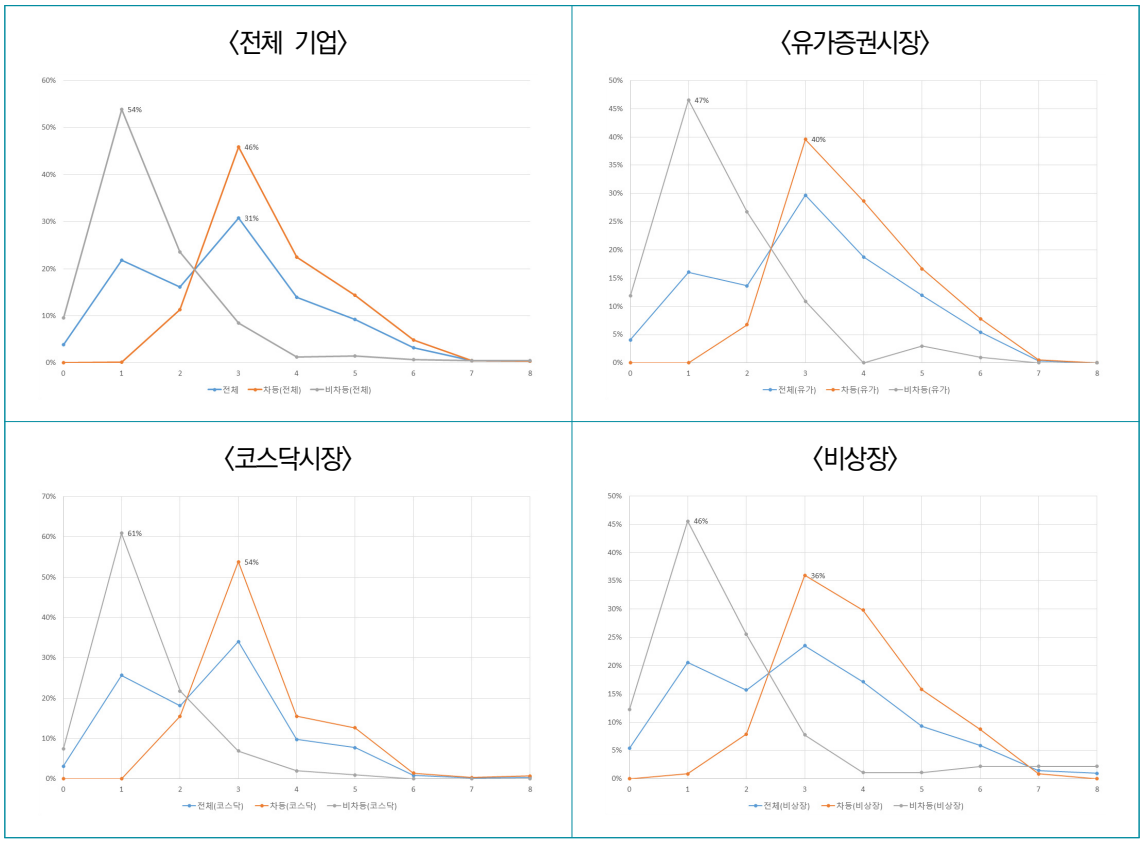
구분	직급 비차등*						
	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전체	361	36%	1.6	1	1.27	12	0.25
유가	89	30%	1.7	1	1.02	6	1
코스닥	187	39%	1.4	1	0.77	5	0.25
코넥스	6	43%	1.7	1	1.03	3	1
비상장	79	39%	2.1	1	2.10	12	1

* 지급율 0 제외

□ 상장여부 및 상장시장에 상관없이 직급별 차등 지급율에서는 3이상 4미만에서, 직급별 비차등 지급율에서는 1이상 2미만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경우, 직급별 차등 지급율은 4이상 5미만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수를 보이고 있어 지급율의 중간값이 4를 보임

〈그림 3〉 시장별 직급별 차등/비차등 지급율 분포



3) 기업규모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지급율을 살펴보면,[6] 대기업의 평균 지급율이 3.3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높음

- 분석대상기업 중 중견·중소기업이 834사로 84%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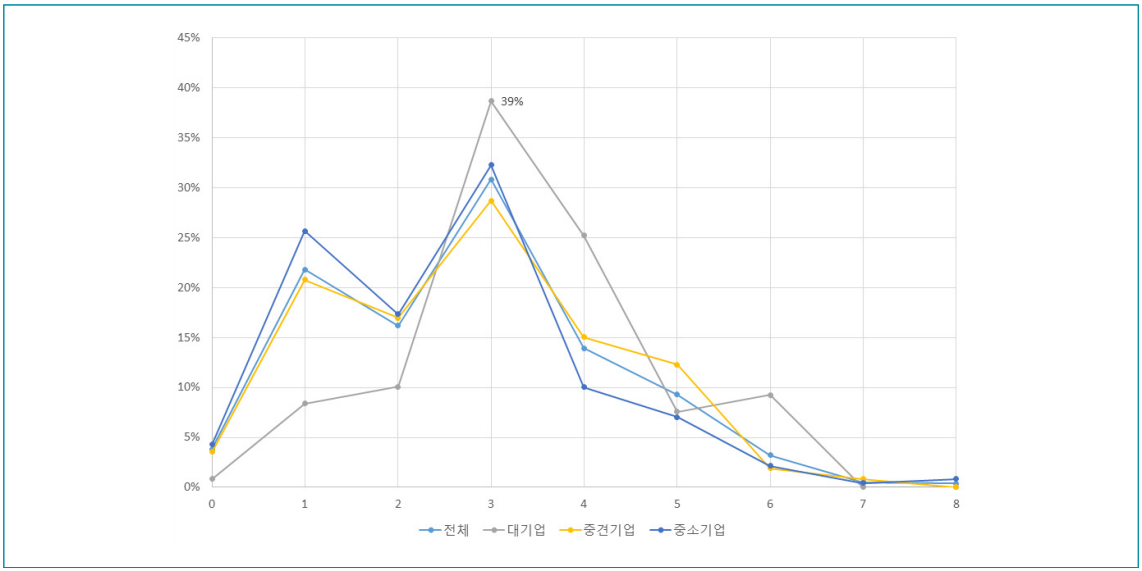
6) 금융회사 제외

〈표 4〉 기업규모별 지급율 현황

구분	기업 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댓값	지급율=0	지급배율 3.6초과
	소계	유가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대기업	119	84	19	0	16	3.3	3	1.33	6	1	45
중견기업	366	169	163	0	34	2.7	3	1.51	7	13	103
중소기업	468	27	288	12	141	2.5	2.5	1.62	12	20	80

- 대기업의 평균 지급율은 전체 평균(2.7)보다 현저히 높으며, 중소기업은 2.5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7)]
- 그러나 지급율 최댓값은 중소기업이 12로 가장 높으며,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6으로 조사됨
- 지급율이 0으로 임원들에게 연봉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 수는 중소기업이 20사로 가장 많고, 중견기업 13사, 대기업은 1사 뿐임
- 지급율이 3.6을 초과하는 기업 수의 비중은 대기업이 38%로 가장 높으며, 중견기업은 28%, 중소기업은 17%로 나타남

〈그림 4〉 기업규모별 지급율 분포



□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직급차등 지급율을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들이 직급 차등 지급율을 많이 도입하였음(79%가 도입)
  - 중견·중소기업의 직급 차등 지급율의 도입 비중은 각각 60%, 55% 수준임

7) 대기업의 지급율은 중견기업보다 유의하게 높고($p<.01$), 중견기업의 지급율은 유의수준 10%에서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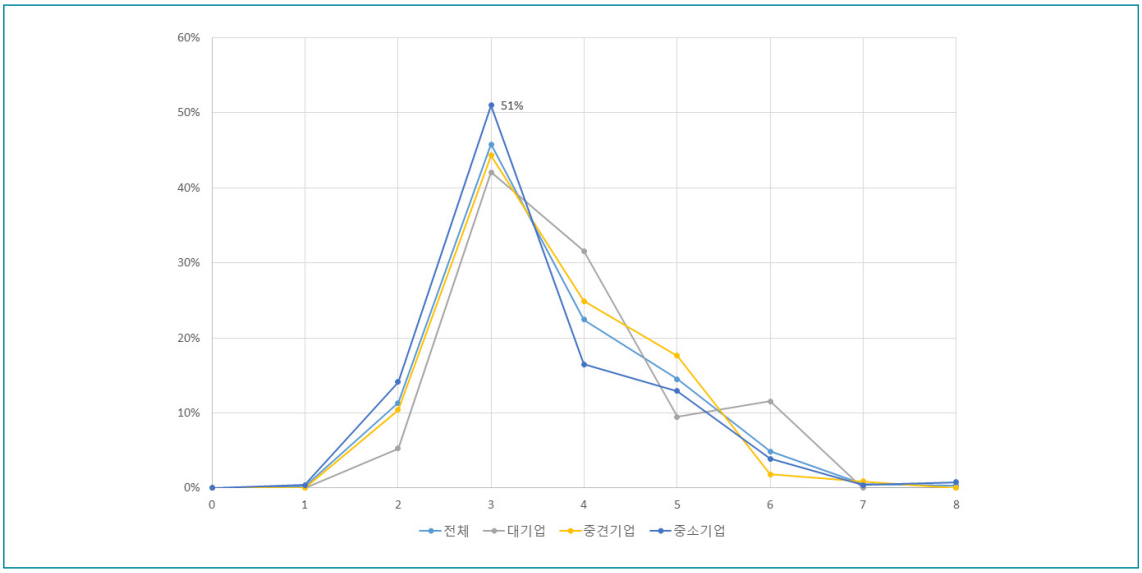
• 대기업의 직급차등 지급율의 평균과 중간값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남(〈표 5〉 참조)[8]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지급율은 낮아지는 반면에, 그 최댓값은 커짐

〈표 5〉 기업규모별 직급 차등 지급율 현황

구분	직급 차등						
	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대기업	94	79%	3.7	3.5	1.10	6	1.5
중견기업	221	60%	3.5	3	1.03	7	1.2
중소기업	255	54%	3.4	3	1.22	10	1

〈그림 5〉 기업규모별 직급 차등 지급율 분포



□ 직급 비차등 지급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 및 중간값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높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급 비차등 지급율에서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최댓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8) 대기업의 지급율은 중소기업의 지급율보다 유의하게 높으나 중견기업과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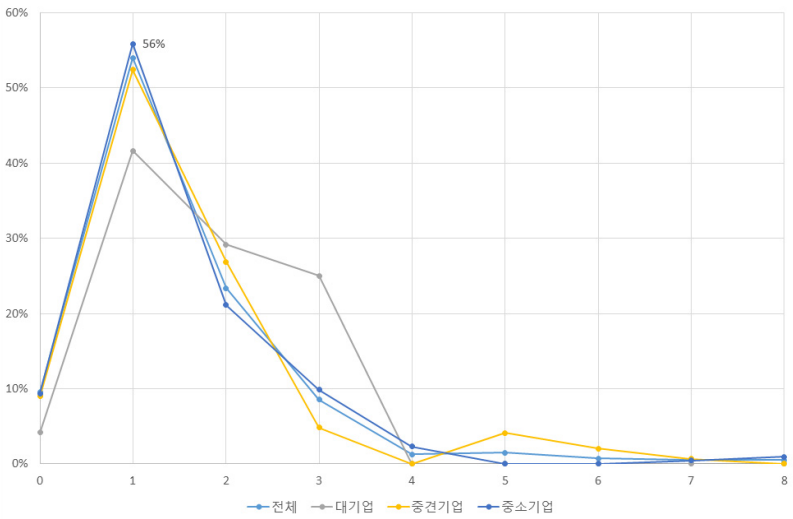
〈표 6〉 기업규모별 직급 비차등 지급율 기업 현황

구분	직급 비차등*						
	기업 수	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대기업	24	20%	1.8	2	0.83	3	1
중견기업	132	36%	1.6	1	1.23	7	0.25
중소기업	193	41%	1.6	1	1.36	12	1

* 지급율 0 제외

- 아래 〈그림 6〉에서 중견·중소기업은 지급율 1에 많은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나 대기업은 지급율 1에서 3의 범위에 넓게 분포하여 중간값이 더 높게 산출됨

〈그림 6〉 기업규모별 직급 비차등 지급율 분포



4) 대기업집단

□ 기업집단별로 최대 지급율을 살펴본 결과, 지급율 3~4가 가장 많았음

- 2019년 5월 기준 59개 대기업집단 중 47개 기업집단에 대한 최대 지급율을 확인함
  - 일부 대기업집단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임원 보수 공시 내역에서 최대 지급율을 확인함
- 47개 기업집단의 최대 지급율 중 가장 높은 최대 지급율은 6으로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이며, 지급율이 1인 기업집단은 8개임
  - 항공운송업에 속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의 최대 지급율은 공통적으로 6으로 나타남

〈표 7〉 기업집단별 임원 퇴직금 최대 지급율 현황

기업집단명	최대 지급율	기업집단명	최대 지급율	기업집단명	최대 지급율
CJ	4	대우건설	2	케이티앤지	3
DB	1	대우조선해양	1	코오롱	4
GS	5	동국제강	4	태광	3
KCC	1	두산	1	태영	4.5
KT	3	롯데	3	포스코	4
LG	5	미래에셋	3.6	하림	3
LS	5	삼성	3.5	하이트진로	3
OCI	6	세아	2	한국타이어	3
SK	4	셀트리온	3	한라	4
SM	2	아모레	3	한진	6
교보	4	애경	3	한화	3
금호아시아나	6	영풍	1	현대백화점	4
네이버	2	유진	3	현대중공업	4
넷마블	2.5	이랜드	1	현대차	4
농협	1.2	카카오	3.5	효성	3
다우키움	1	대림	1.2		

* 가나다順

- 47개 기업집단 중 최대 지급율이 3이상 4이하인 기업집단이 26개로 55%를 차지하고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 2002년 2월 이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개)정안 또는 퇴직금 지급율을 공개한 기업들을 조사하여 총 990사의 퇴직금 지급율을 파악하였음

□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은 2.7,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남

- 총 990개 분석대상기업 중 60%인 591사가 직급별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3.5, 중간값은 3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지급율은 10임

-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지 않는 기업들의 평균 지급율은 1.6, 중간값은 1로 나타났으며, 최대 지급율은 12임

• 기업규모별 지급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 지급율이 3.3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높음

- 특히 대기업들이 직급 차등 지급율을 많이 도입하였으며(79%가 도입), 대기업의 직급차등 지급율의 평균과 중간값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직급 비차등 지급율에서도 대기업의 평균 및 중간값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높음

• 대기업집단의 최대 지급율을 살펴본 결과,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이 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지급율이 3이상 4이하인 기업집단이 26개로 조사됨

□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은 지급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많은 기업들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제개정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개가 안 됨

•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승인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해당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9]이며, 과도한 지급율은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는 측면이 있음[10]

•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퇴직금 지급율 규정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11]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공시는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음

• 먼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규정 제개정 승인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전문을 기재토록 함

• 다음으로 임원 보수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보고서에 해당 규정의 전문을 기재 또는 첨부토록 함

• 마지막으로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에게 발간 의무화한 '지배구조 보고서'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첨부 또는 기재토록 함

9)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0) 오덕교·김보민·이다원(2015), "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ESG Focus, 2015.9.25.

11) 각주 6) 참조

ESG 최신현안분석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발 행 일 2019. 9. 3.

발 행 인 신진영

발 행 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신관 9층

전 화 (02) 3775-3339

홈페이지 www.cgs.or.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 766-299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33) 신관 9층 (07329)
TEL.02-3775-3339 FAX. 3775-2630 www.cgs.or.kr